##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명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기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예측하지 못한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우리사회와 학교 현장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과 지역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할 뿐 아니라, 학교 내 각종 감염병 발생및 확산시 대책마련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확산 방지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획과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시에는 국가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감염병대 책본부의 장을 명시하여 학교와 교육청이 체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중앙정 부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등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